

의안번호	2217629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6.4.7.
추계번호	26B1606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의5(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1.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2. 제35조의2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3. 제35조의4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리 4.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의 배출 및 순환이용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 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	재량규정
2	안 제39조(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, 순환자원,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의 정보를 관리·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(이하 “순환자원정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	
3	안 제4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,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5조의5(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9조(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)		
3	안 제4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)		

2. 상세 사유

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(안 제35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특례구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경우, 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수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참고로 2025년 4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,359개소이며,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체는 131,296개소임
 - －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위탁 대가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39조)

- 개정안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의 정보를 관리·제공하도록 할 경우,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행법 제39¹⁾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순환자원정보센터 구축·운영」 사업을 통해 순환원료 및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5억 3,300만원임
 - －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현재 운영 중인 순환자원정보센터 업무 범위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증가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및 구역 내 부산물

1) 제39조(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,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·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(이하 “순환자원정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순환이용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(안 제35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이나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할 경우,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현행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·기술적 지원 사업 현황은 아래의 [표 1]과 같음

[표 1]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41조 근거 지원 사업 목록(2026년 기준)

연번	사업명	예산
1	탈플라스틱 사회전환 확산 캠페인(공모 사업)	707백만원
2	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(R&D)	336억원
3	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사업(R&D)	327억원
4	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개발사업(R&D)	327억원
5	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사업(R&D)	190억원
6	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(R&D)	340억원
7	폐의류 문제해결 플래그십 재활용 기술개발사업(R&D)	175억원
8	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재활용 기술개발사업(R&D)	329억원
9	유기성 폐자원 활용 고품질 바이오연료화 기술개발사업(R&D)	375억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및 구역 내 사업자의 규모와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